



의안번호	제22호
회의 연월일	2025. 3. 4. (제559회 회의)

심의
의결
사항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출부서	경찰청 (경비국)
제출연월일	2025. 1. 21.

대테러위기관리과장, 작전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보수를 2024년보다 3.0퍼센트 인상(순경 1호봉 ~ 6호봉 등 일부 구간은 추가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봉급을 감안하여 정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

라. 기 타 :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2,000,900	-	-	-
2	2,031,100	-	-	-
3	2,070,500	-	-	-
4	2,119,500	-	-	-
5	2,178,700	-	-	-
6	2,248,900	-	-	-
7	2,331,000	-	-	-
8	2,420,900	-	-	-
9	2,507,300	-	-	-
10	2,590,200	-	-	-
11	2,669,500	-	-	-
12	2,747,900	-	-	-
13	2,823,400	3,014,600	-	-
14	2,896,700	3,090,800	-	-
15	2,966,700	3,164,000	-	-
16	3,034,400	3,234,800	-	-
17	3,100,600	3,300,700	-	-
18	3,162,300	3,364,700	-	-
19	3,222,900	3,426,200	3,830,300	-
20	3,280,600	3,484,800	3,893,200	-
21	3,334,900	3,540,600	3,953,300	-
22	3,387,400	3,594,300	4,010,000	-
23	3,437,300	3,645,400	4,064,800	-
24	3,485,200	3,694,800	4,116,900	4,403,100
25	3,530,600	3,741,600	4,166,100	4,455,700
26	3,572,100	3,787,000	4,213,400	4,503,800
27	3,607,600	3,824,800	4,253,300	4,544,900
28	3,641,800	3,861,300	4,290,500	4,584,600
29	3,674,800	3,895,700	4,326,500	4,622,100
30	3,707,100	3,929,100	4,361,000	4,657,300
31	3,738,400	3,961,500	4,393,300	4,691,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위기관리과	
연 락 처	(02) 3150 - 1226